

아산국가산업단지(우정지구) 유보지 개발사업
환 경 영 향 평 가
(평 가 항 목 · 범 위 등 의 결 정 내 용)

2021. 11



국 토 교 통 부

1.1 사업의 배경 및 목적

- 아산국가산업단지는 기계 자동차 , 관련업종과 수도권 이전공장의 공업용지수요에 대처하고 수도권 정비 및 중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1979년 12월 14일 「산업기지개발촉진법 에」 의한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됨
-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지구는 기아자동차 제조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나, 대상지내에 40여년간 남아있는 장기 미개발토지로 인해 집단청원(김연철 외 52인, 2016년 5월) 등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
- 따라서, 국가산업단지(유보지)의 장기미개발 및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유보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1.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

- 본 사업은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(면적 448,800㎡)으로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

<표 1.2-1>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

제23조(「환경영향평가법」 등의 적용 특례) ① 「환경영향평가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검토 또는 평가하여야 한다.

1.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
2.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: 「환경영향평가법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

<표 1.2-2> 환경영향평가실시근거 및 협의요청 시기

구 분	대상사업의 범위	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
2.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	가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9조 또는 제39조의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○ 사업면적 : 448,800㎡		

1.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

- 1979. 12. 14 :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(건설부고시 제614호)
 - ⇒ 경기 화성·평택, 충남 당진·아산지역 육지 3억평(1천km²)과 인접해면 지정
- 1991. 4. 30 : 국가산업단지지정(산업자원부고시 제91-20호)
- 2006. 12. 29 : 아산국가산업단지 변경(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-605호)
 - ⇒ 산업단지중 현실적으로 개발전망이 없는 부지 제척 후 5개 지구 총면적 26.94km²로 개편
 - ⇒ 우정지구 3.54km², 포승 8.08km², 원정 8.58km², 고대 3.63km², 부곡 3.11km²
 - ⇒ 2개 지구에 향후 개발을 위한 유보지 계획. 우정지구(299천m²), 원정지구(1,556천m²)
- 2020. 12 : 아산국가산업단지(우정지구) 유보지 투자의향서 접수(448천m²)
 - (화성도시공사 → 국토교통부)
- 2021.01 : 중앙부처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(국토교통부 → 관련부서)
- 2021.04 : 산업단지 3개년 수급계획 확정(국토교통부 → 경기도)
- 2021.10 :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개최
- 2021.10 :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(물량배정)(경기도)
- 2021.12 : 승인신청서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 제출 예정
- 2022.01 : 통합설명회 예정
- 2021. :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고서 제출 예정
- 2022. : 산업단지 승인고시 및 착공예정

1.4 사업의 개요

- 사업명 : 아산국가산업단지(우정지구) 유보지 조성사업
- 위치 :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일원
- 면적 : 448,800m²(약 135,800평)
- 사업기간 : 2021년 ~ 2025년
- 개발사업시행자 : 우정엠테크밸리 주식회사
- 지정권자 : 국토교통부
- 협의기관 : 환경부

○ 토지이용계획

－ 아산국가산업단지 총괄(변경)

구 분		면적(천 m ²)			비고
		계	경기측	충남측	
계	기정	26,348	20,193	6,155	증) 157천 m ²
	변경	26,505	20,350	6,155	
공업지역	기정	16,635	10,962	5,673	증) 448천 m ²
	변경	17,083	11,410	5,673	
일반공업지역	기정	14,242	8,669	5,573	증) 448천 m ²
	변경	14,690	9,117	5,573	
항만시설보호구역		1,893	1,792	101	－
중요시설물보존지구		501	501	－	－
준공업지역		1,057	937	120	－
일반준공업지역		995	875	120	－
중요시설물보존지구		62	62	－	－
녹지지역		5,491	5,491	－	－
상업지역 (항만시설보호지구)		198	198	－	－
유통상업지역		122	122	－	－
주거지역		996	634	362	－
유보지역	기정	1,849	1,849	－	감) 291천 m ²
	변경	1,558	1,558	－	

－ 포승지구, 원정지구, 고대지구, 부곡지구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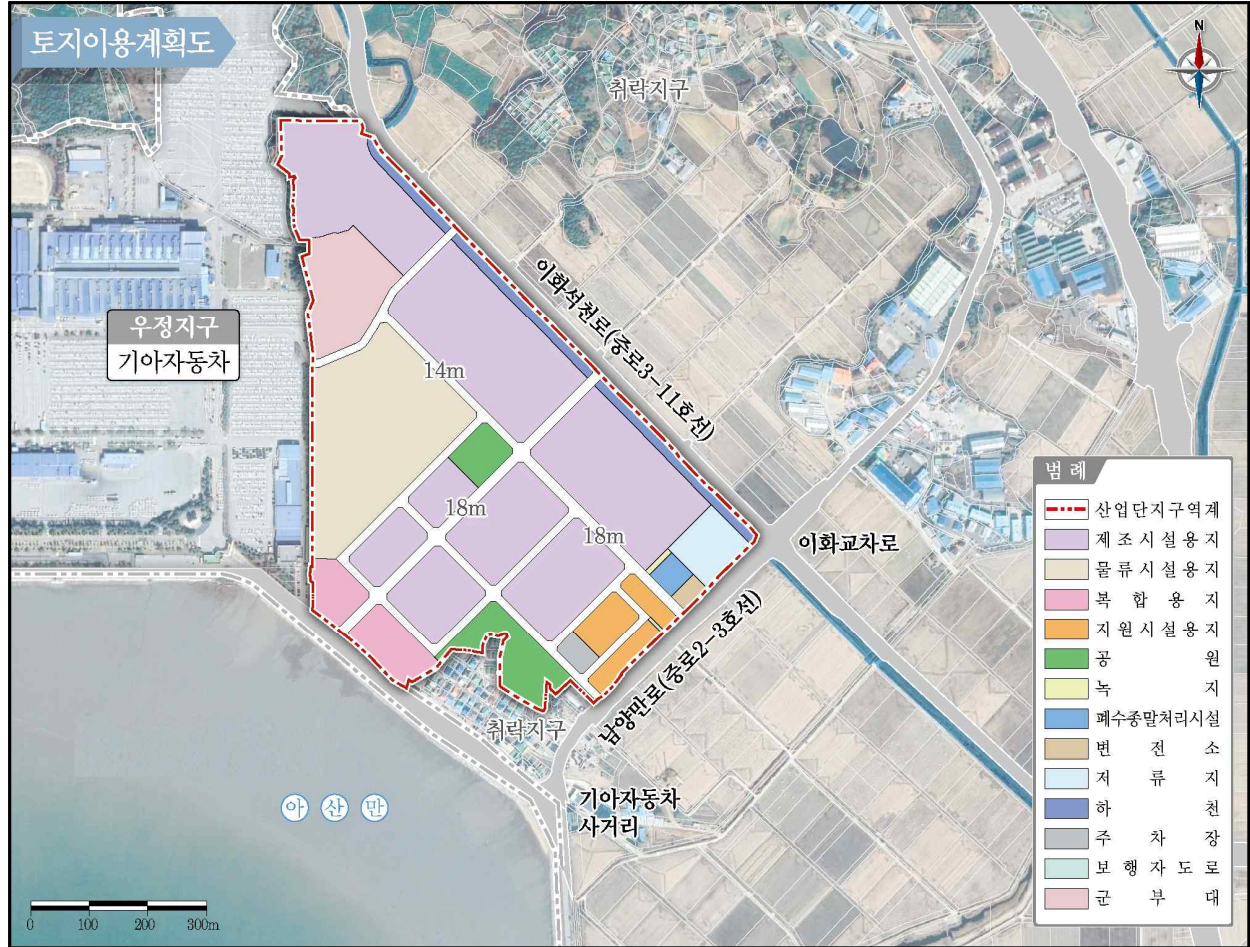
구 분		면적(천 m ²)			
		충남포승지구	충남고대지구	경기원정지구	경기부곡지구
계		8,078	3,036	8,587	3,119
공업지역		6,518	3,036	1,874	2,637
일반공업지역		4,225	2,936	1,874	2,637
항만시설보호구역		1,792	101	－	－
중요시설물보존지구		501	－	－	－
준공업지역		937	－	－	120
일반준공업지역		875	－	－	120
중요시설물보존지구		62	－	－	－
녹지지역		－	－	4,826	－
상업지역 (항만시설보호지구)		198	－	－	－
유통상업지역		－	－	122	－
주거지역		425	－	209	362
유보지역		－	－	1,556	－

－ 우정지구(변경)

지역 및 지구		면적(천 m ²)	비고
계	기정	3,528	증) 157천 m ²
	변경	3,685	
공업지역	기정	2,570	증) 448천 m ²
	변경	3,018	
일반공업지역	기정	2,570	증) 448천 m ²
	변경	3,018	
항만시설보호구역		－	－
중요시설물보존지구		－	－
준공업지역		－	－
일반준공업지역		－	－
중요시설물보존지구		－	－
녹지지역		665	－
상업지역(항만시설보호지구)		－	－
유통상업지역		－	－
주거지역		－	－
유보지역	기정	293	감) 291천 m ²
	변경	2	

－ 우정지구 내 유보지 토지이용계획(안)

구분	기 정		변 경		비고
	면적(m ²)	구성비(%)	면적(m ²)	구성비(%)	
합 계	291,776	100.0	448,800	100.0	
산업시설용지	－	－	282,197	62.9	
제조시설용지	－	－	216,530	48.3	
물류시설용지	－	－	65,667	14.6	
복합용지	－	－	18,747	4.2	산업시설용지 포함
지원시설용지	－	－	15,008	3.3	
공공시설용지	－	－	108,642	24.2	
공원	－	－	22,450	5.0	
녹지	－	－	527	0.1	
폐수종말처리장	－	－	2,773	0.6	
변전소	－	－	1,816	0.4	
저류지	－	－	10,097	2.3	
하천	－	－	17,553	3.9	
주차장	－	－	2,698	0.6	
도로	－	－	50,728	11.3	
군부대(존치)	－	－	24,206	5.4	
미지정지역	291,776	100.0	－	－	



(그림 1.4-1) 토지이용계획도(안)

○ 업종배치계획(안)

구 분		면적 (㎡)	구성비 (%)	비 고
합 계		300,944	100.0	
제조시설용지	C28,C30,C31	99,233	33.0	입주의향기업업종
	C20,C22,C23,C25,C26, C28,C29,C30,C31	76,911	25.6	—
	제한업종 (C10~C15,C17,C19)	40,386	13.4	산업시설용지의 약 19%
물류시설용지	H52	65,667	6.2	입주의향기업업종
복합용지	C26,C27,C28, C29,C30,M70	18,747	21.8	첨단업종



(그림 1.4-2) 업종배치도(안)



(그림 1.4-3) 사업지구 위치도

1.5 사업의 기대효과

- 유보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
- 개발이 보류된 유보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

제 2 장 환경영향평가 항목 · 범위 등의 결정내용

2.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

- 평가항목은 「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」 제2조1항 [별표1],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2017-215호」 및 “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” 등에 준하여 항목을 설정하였음

2.1.1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

〈표 2.1.1-1〉 환경영향평가 항목선정

구분	평가항목 선정
중점항목(17개)	○ 동 · 식물상, 해양 동 · 식물상, 자연환경자산, 대기질, 온실가스, 악취, 수질, 수리 · 수문, 해양환경, 토지이용, 토양, 지형 · 지질, 친환경적 자원순환, 소음 · 진동, 위락 · 경관, 전파장해, 위생공중보건
일반항목(3개)	○ 기상, 인구 · 주거, 산업
제외항목(1개)	○ 일조장해

〈표 2.1.1-2〉 항목별 선정사유

분 야	항 목	선정결과			선정결과에 대한 사유
		중점	현황	제외	
자연생태 환경	동·식물상	○	-	-	○ 사업시행 전후 동 · 식물상 서식환경 변화 예측
	해양 동 · 식물상	○	-	-	○ 사업시행 전후 해양생태계 서식환경 변화 예측
	자연환경자산	○	-	-	○ 각종 보전 · 보호지역 분포 현황 및 영향유무 파악
대기환경	기상	-	○	-	○ 대기질, 악취, 건강영향평가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(기상대자료)
	대기질	○	-	-	○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및 장비투입에 따른 오염물질발생 ○ 운영시 산업단지 연료사용 및 공정배출로 인한 주변지역의 대기질 영향 예상
대기환경	온실가스	○	-	-	○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
	악취	○	-	-	○ 운영시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악취 영향 발생

<표 2.1.1-2 계속> 항목별 선정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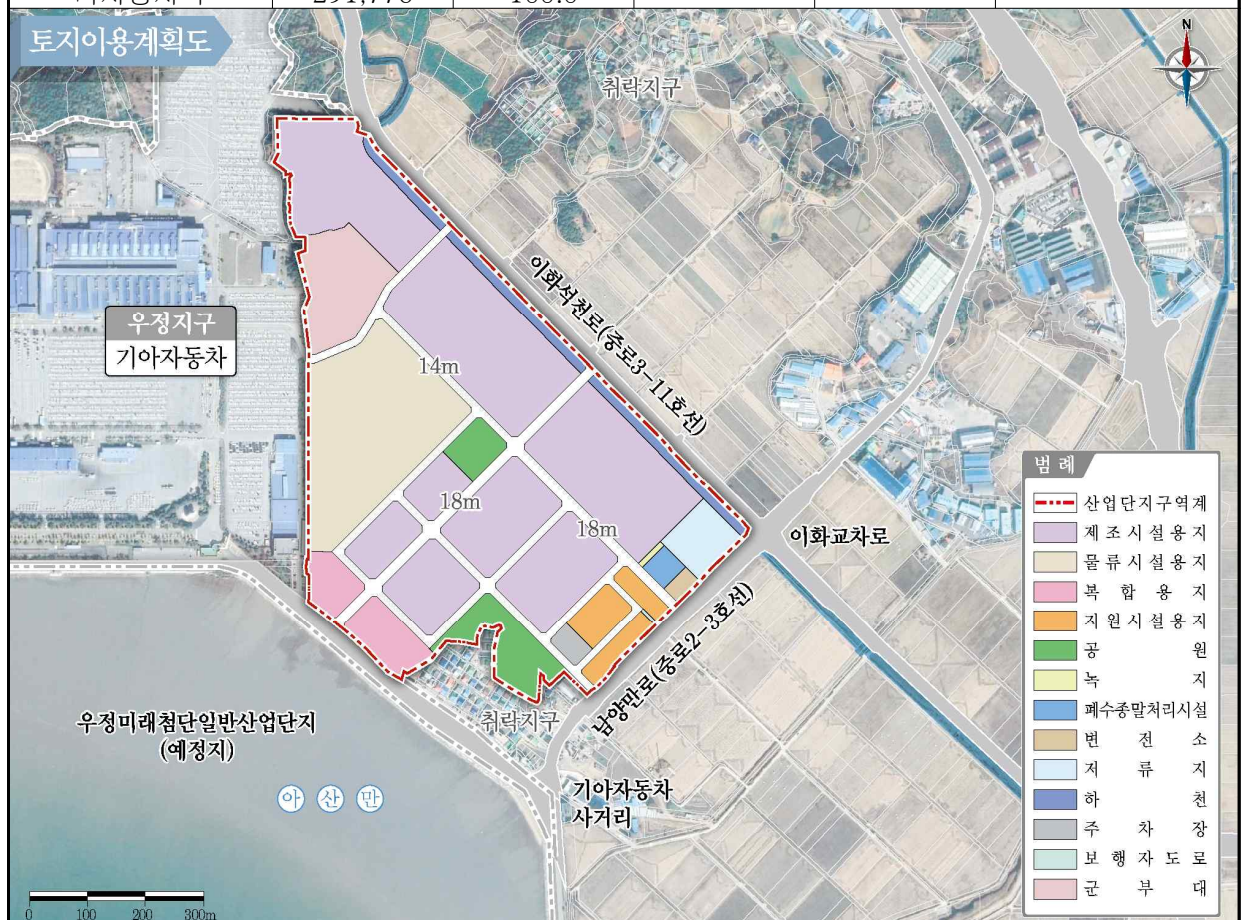
분 야	항 목	선정결과			선정결과에 대한 사유
		중점	현황	제외	
수환경	수질	○	-	-	- 공사시 토사유출 및 투입인부 발생오수로 인한 주변수계 미치는 영향 검토 - 운영시 발생오수로 인한 주변수계 미치는 영향 검토
	수리·수문	○	-	-	인근 수계의 수리·수문 현황조사, 토사유출 및 홍수위, 홍수량 검토를 통해 재해안전성검토
	해양환경	○	-	-	공사시 토사 유출로 인한 부유사 발생 및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 검토
토지환경	토지이용	○	-	-	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
	토양	○	-	-	공사장비에 의한 폐유, 운영시 토양오염방지계획 수립
	지형·지질	○	-	-	공사시 지형변화 및 토공량 검토
생활환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○	-	-	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
	소음·진동	○	-	-	- 공사시 장비투입에 따른 소음·진동영향 - 운영시 산업단지 공장 운영에 의한 소음·진동영향
	위락·경관	○	-	-	사업시행에 따른 경관 변화 예측
	위생·공중보건	○	-	-	운영시 산업단지 가동으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분석
	일조장해	-	-	○	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일조영향 없음
	전파장해	○	-	-	사업지구 산업단지 운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 예상
사회·경제환경	인구·주거	-	○	-	통계자료를 통한 사업지역의 인구 및 주거현황 파악
	산업	-	○	-	통계자료 및 문헌자료를 통한 산업현황 파악

2.1.2 대안의 비교 ·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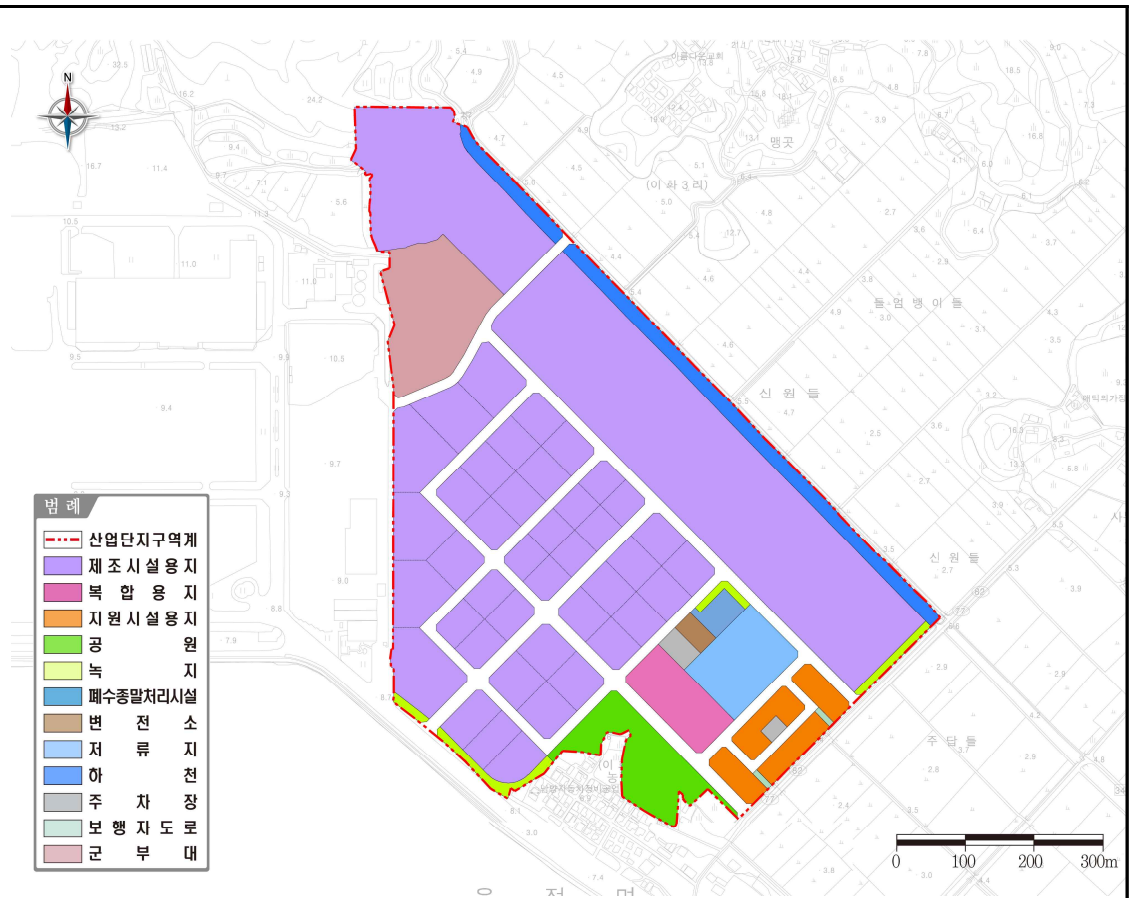
- 주변지역여건과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, 자연환경보존과 단지조성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
- 남측 취락지구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며,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

〈표 2.1.2-1〉 토지이용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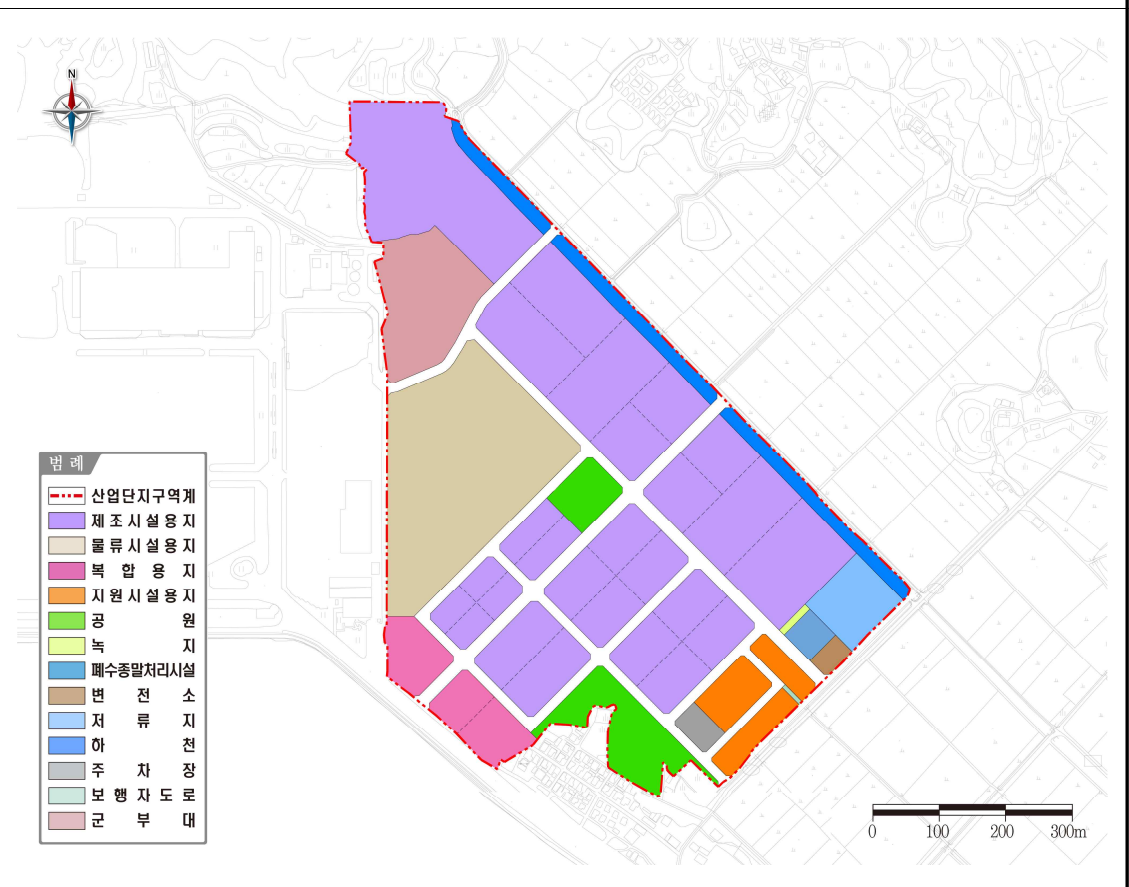
구분	기 정		변 경		비고
	면적(m ²)	구성비(%)	면적(m ²)	구성비(%)	
합 계	291,776	100.0	448,800	100.0	
산업시설용지	—	—	282,197	62.9	
제조시설용지	—	—	216,530	48.3	
물류시설용지	—	—	65,667	14.6	
복합용지	—	—	18,747	4.2	산업시설용지 포함
지원시설용지	—	—	15,008	3.3	
공공시설용지	—	—	108,642	24.2	
공원	—	—	22,450	5.0	
녹지	—	—	527	0.1	
폐수종말처리장	—	—	2,773	0.6	
변전소	—	—	1,816	0.4	
저류지	—	—	10,097	2.3	
하천	—	—	17,553	3.9	
주차장	—	—	2,698	0.6	
도로	—	—	50,728	11.3	
군부대(존치)	—	—	24,206	5.4	
미지정지역	291,776	100.0	—	—	



대안1



대안2



〈표 2.1.2-2〉 대안의 설정 및 분석

구 분	대안1	대안2
공간 배치	◦ 산업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복합용지, 공공시설용지(공원, 저류지, 주차장, 도로 등)	◦ 산업시설용지(제조시설용지, 물류시설용지, 지원시설용지, 복합용지, 공공시설용지(공원, 저류지, 주차장, 도로 등))
장점	◦ 산업시설용지는 가로망에 의해 적정 블록을 구획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단지 조성 ◦ 표준블록으로 계획하여 작은 규모의 공장부터 대규모 공장까지 다양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 ◦ 산업단지 진입부 지원시설 인근에 배치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편리성 도모 ◦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진입도로 주변에 적정 규모로 배치 ◦ 근린공원은 기존취락지 인근에 계획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 ◦ 단지내 도로폭 15~18m로 계획하여 산업시설용지 접근성 제고	◦ 산업시설용지는 다양한 규모의 블록규모로 계획해 입주기업의 니즈를 반영 ◦ 현재, 기아자동차 출고장으로 이용중인 지역을 물류시설로 계획 ◦ 남측 진출입부에 복합용지를 계획해 취락지구 상업기능 및 아산첨단일반산업단지 산업기능의 연속성을 유지 ◦ 산업단지 종사자와 이용객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고려해 접근성이 용이한 남양만로변에 배치 ◦ 취락지구 주민의 정주환경 보호와 여가활동을 고려해 취락지구 연접지역에 근린공원을 계획하며, 산업단지 중심부에 소공원을 계획 ◦ 단지내 도로폭을 14~18m로 계획해 원활한 교통처리를 도모 ◦ 폐수종말처리장, 저류지, 변전소 등을 산업단지 입구에 통합 설치
단점	◦ 대안2 대비 주 진입도로가 1개노선으로 차량 진출입시 병목현상 발생 우려 ◦ 대안2 대비 지원시설용지 및 공공시설등이 남서측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자들의 이용성이 저하됨	◦ 주 진출입로가 2개 노선으로 교차 상충이 대안1 대비 많은 것으로 분석됨
선정(안)		◎
선정사유	◦ 주변 공장단지가 입지하고 있으나 생활편익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지원시설을 남서측에 집중배치(대안1)보다는 지원시설, 복합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분산배치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 ◦ 진입도로는 주변 현황도로를 고려하여 주진입도로를 2개노선으로 계획 ◦ 입주기업들의 수요, 지형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각 용지별로 계획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한 대안2를 최종 선정함	

2.1.3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- 본 사업계획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선정한 평가항목별 현황조사, 평가범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(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 수용)

〈표 2.1.3-1〉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구 분		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	대상지역 범위	비 고
자연 생태 환경	동·식물상	○ 사업시행으로 인한 육상 식생 및 동물서식지 영향 예상지역 ※ 심의의견을 수용하여 평가범위 확대	○ 사업지구 경계 1.0k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해양생태계	○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동·식물상 서식환경 변화 ※ 심의의견을 수용하여 평가범위 확대	○ 사업지구 경계 8k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자연환경 자 산	○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※ 심의의견을 수용하여 평가범위 확대	○ 사업지구 경계 5k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대 기 환 경	기 상	○ 사업지역의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분석의 기초자료 이용	○ 사업지구 인근 기상관측소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대 기 질	○ 공사시 공사장비 이동·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○ 운영시 산업단지 운영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인한 영향	○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악 취	○ 사업지구 내 유치업종의 운영으로 인한 사업지구 인근에 미치는 영향	○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온실가스	○ 공사시 건설장비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 ○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이용시설에 따른 영향	○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○ 공사시 ○ 운영시
수 환 경	수 질	○ 공사시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 발생 및 투입인원으로 인한 오수 발생시 유입 가능 수계 ○ 운영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수계	○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수리·수문	○ 사업시행에 따른 홍수유출량 변화 예상지역 ○ 운영시 수자원이용에 따른 수역의 이용상황 변화 지역	○ 사업지구 및 주변 수계	○ 공사시 ○ 운영시
	해양환경	○ 해양 수·저질 및 연속조류 등 조사 ○ 공사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상지역 ○ 운영시 오·폐수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※ 심의의견을 수용하여 평가범위 확대	○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8km 이내	○ 공사시 ○ 운영시

〈표 2.1.3-1 계속〉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

구 분		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 및 사유	대상지역 범위	비 고
토 지 환 경	토지이용	◦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	◦ 공사시
	토 양	◦ 사업지구내 산업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	◦ 공사시 ◦ 운영시
	지형·지질	◦ 공사중 지형 및 지질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	◦ 공사시
생 활 환 경	친환경적 자원순환	◦ 사업지구내 공장 등 지장물 철거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영향 예상지역	◦ 사업지구	◦ 공사시 ◦ 운영시
	소음·진동	◦ 장비 가동시 발생하는 소음·진동의 영향 예상지역 ◦ 사업지구내 공장소음에 의한 주변지역의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0.5km 이내	◦ 공사시 ◦ 운영시
	위락·경관	◦ 산업시설의 입지로 경관의 변화 및 Sky Line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◦ 운영시
	위생·공중보건	◦ 사업시행으로 인해 위생·공중보건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2km 이내	◦ 운영시
	전파장해	◦ 변전소 등으로 인해 전파장해가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◦ 운영시
사 회 · 경 제 환 경	인구·주거	◦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구 및 주거의 변화, 민감계층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◦ 운영시
	산 업	◦ 사업시행으로 인한 산업시설 배치로 인해 산업 환경 변화가 예측되는 지역	◦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	◦ 운영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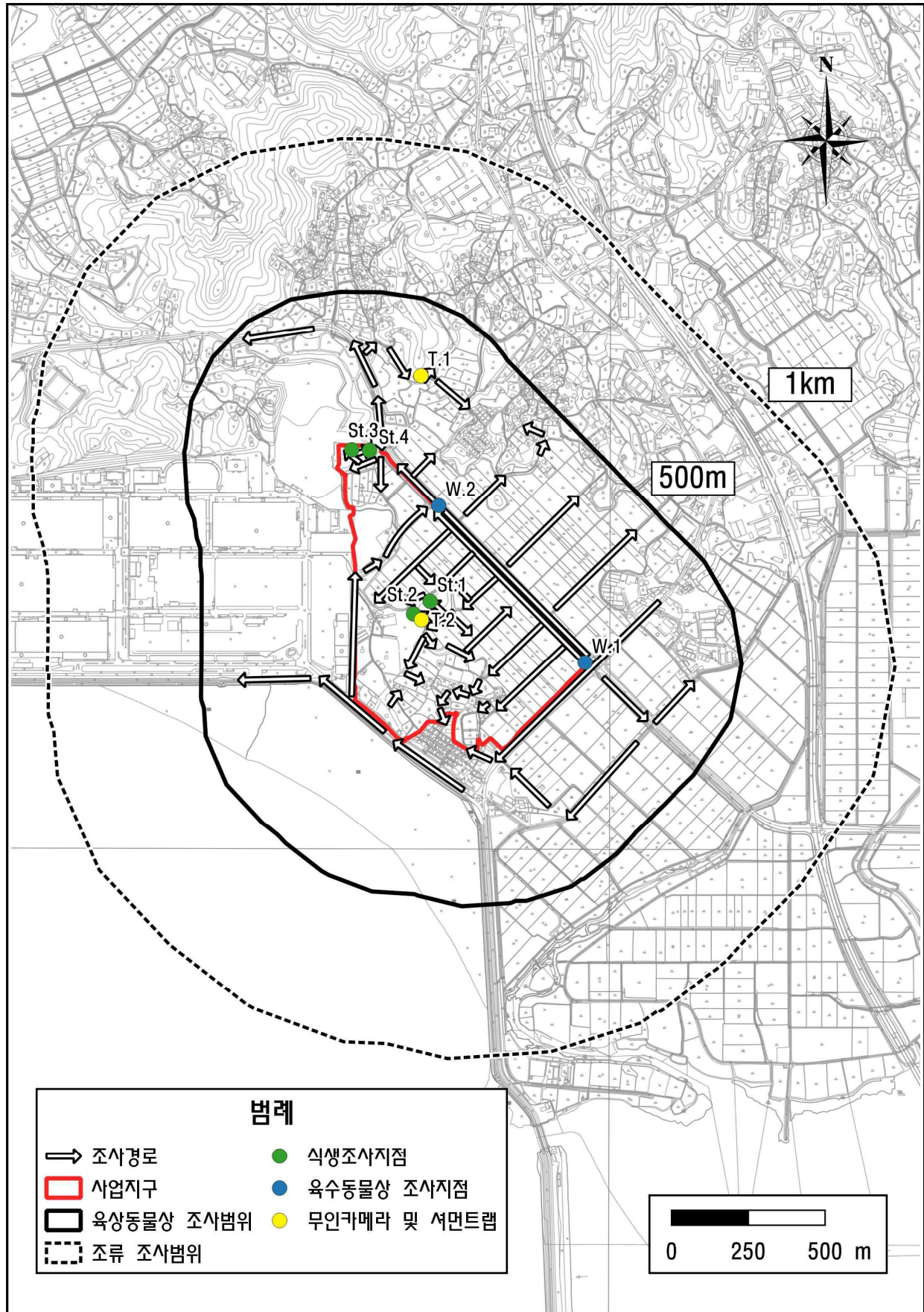
(그림 2.1.3-1)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 설정도

2.1.4 환경현황 조사계획

- 본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구내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,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환경질(대기질, 특정대기, 악취, 수질(지표, 지하), 토양, 소음·진동(도로))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
- 동·식물상은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을 조사하고 조사시기는 「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, 환경부고시 2020-289호」 내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을 참고하여 분류군별 조사를 계획하였음

〈표 2.1.4-1〉 육상동·식물상 조사항목 선정

구 분	조사항목	조사지점	조사횟수	비 고
육상 식물상	○ 소산식물분포현황, 생활형 분석 ○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, 보호수 및 노거수 ○ 기타-귀화식물,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, 특산식물 ○ 현존식생-주요 식생의 면적분포, 현존식생도 작성 ○ 식생보전등급(VCC) 사정, 식생보전등급도 작성 ○ 특이식생, 식생자원의 평가	○ 사업지구 및 주변경계 0.5km 이내	3회	봄(5월) 여름(8월) 가을(10월)
육상 동물상	○ 포유류의 분포현황 ○ 조류의 분포현황 ○ 양서·파충류의 분포현황 ○ 육상곤충류의 분포현황 ○ 기타-주요서식지, 동물이동로, 특정개체군 등	○ 사업지구 및 주변경계 0.5km 이내	3회	봄(5월) 여름(8월) 가을(10월)
	○ 조류의 분포현황(겨울철새 포함)	○ 사업지구 및 주변경계 1km 이내	1회	동계 (11월~2월)
육수 동물상	○ 조사지개황, 주요수계 생태환경 ○ 어류 및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 ○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의 분포현황	○ 2개 지점	3회	봄(5월) 여름(8월) 가을(10월)
생태 · 자연도	○ 국립생태원 환경지리정보의 해당입지 생태·자연도 검색	○ 사업지구 및 주변경계 5km	-	-
문헌 조사	○ 전국자연환경조사, 주변평가서 등 최근 5년 이내 문헌조사(법정보호종, 주요종 등)	○ 사업지구 및 주변경계 5km	-	-



(그림 2.1.4-1) 동·식물상 조사지점도

<표 2.1.4-2 >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

구 분	조사항목	조사지점	조사횟수	비 고
대 기 질	○PM-10, PM-2.5, SO ₂ , NO ₂ , CO, O ₃ , Pb, 벤젠 (8개 항목)	5지점	3회	3일 연속
약취	○복합악취 ○지정악취물질(암모니아, 메탈머captan, 황화수소, 다이메틸설파이드, 다이메티다이설파이드, 트라이메틸아민, 아세트알데하이드, 스타이렌, 프로피온알데하이드, 부티르온알데하이드, n-발레르알데하이드, i-발레르알데하이드, 톨루엔, 자일렌, 메틸에틸케톤, 메틸아이소부티르케톤, 부티르아세테이트, 프로피온산, n-부티르산, n-발레르산, i-발레르산, i-부티르알콜올) (27개 항목)	3지점	3회	—
지표수질	○수온, 수소이온농도(pH), 부유물질(SS), 용존산소(DO), 생물학적산소요구량(BOD), 화학적산소요구량(COD), 총질소(TN), 총인(TP), 총유기탄소(TOC), 유량 (10개 항목)	3지점	3회	—
지하수질	○수소이온농도(pH), 증발잔류물, KMnO ₄ 소비량, 암모니아성질소(NH ₃ -N), 질산성질소(NO ₃ -N), 시안(CN), 수은(Hg), 불소, 6가크롬(Cr ⁺⁶), 페놀(Phenol), 비소(As), 일반세균, 총대장균군, 경도, 음이온계면활성제(ABS), 철(Fe), 망간(Mn), 탁도, 냄새, 색도, 맛, 아연(Zn), 황산이온(SO ₄ ²⁻), 염소이온(Cl ⁻), 카드뮴(Cd), 구리(Cu) (26개 항목)	2지점	3회	—
토양	○수소이온농도(pH), 카드뮴(Cd), 구리(Cu), 비소(As), 아연(Zn), 유기인, 수은(Hg), 6가크롬(Cr ⁺⁶), 니켈(Ni), 불소(F), 폴리코포리네이티드비페닐(PCB), 시안(CN), 페놀, BTEX, TPH, 납(Pb), TCE, PCE (21개 항목)	4지점	3회	—
위생 · 공중보건	○염화수소(HCl), 수은(Hg), 비소(As), 카드뮴(Cd), 6가크롬(Cr ⁺⁶), 니켈(Ni), 포름알데히드, 스티렌(C ₈ H ₈), 시안화수소(HCN), 염화비닐 (10개 항목)	5지점	3회	—
소음	○소음도(낮 4회, 밤 2회)	4지점	3회	—
진동	○진동도(낮 2회, 밤 1회)	4지점	3회	—

〈표 2.1.4-3〉 해양환경 및 해양동·식물상 조사항목 선정

구 분		조사항목	조사지점	조사횟수	비 고
해양 환경	해양 수질	수온, pH, 염분, DO, DO 포화도, SPM, COD, T-N, T-P, Chl-a, 총대장균군, 용매추출유분, Cr⁶⁺, As, Cd, Pb, Zn, Cu, CN, Hg, PCBs, 벤젠, Phenol, ABS, 투명도, 표층 DIN, 표층 DIP (27개 항목)	7지점 (표·저층)	3회	-
	해양 저질	입도, 함수율, 강열감량, AVS, COD, As, Cd, Cr, Cu, Hg, Ni, Pb, Zn, PCBs, T-N, T-P, PAHs (17개 항목)	5지점	3회	-
	해양 물리	- 해수유동현황 조사 및 실험 -연속조류관측(층별), 조위관측 - 부유사 현황 -연속부유사관측	1개 지점	1회 (30일연속)	ADCP 계류, 수치모델
해양 동·식물상	해양 동·식 물상	동물플랑크톤	7개 지점	3회	-
		식물플랑크톤	7개 지점 (표, 저)		
		조하대저서동물	5개 지점		
		어란 및 자치어	5개 지점		
		연성조간대저서동물	1개 지선 (5정점)		
		해산어류	3개 지점		

〈표 2.1.4-4〉 환경질 조사지점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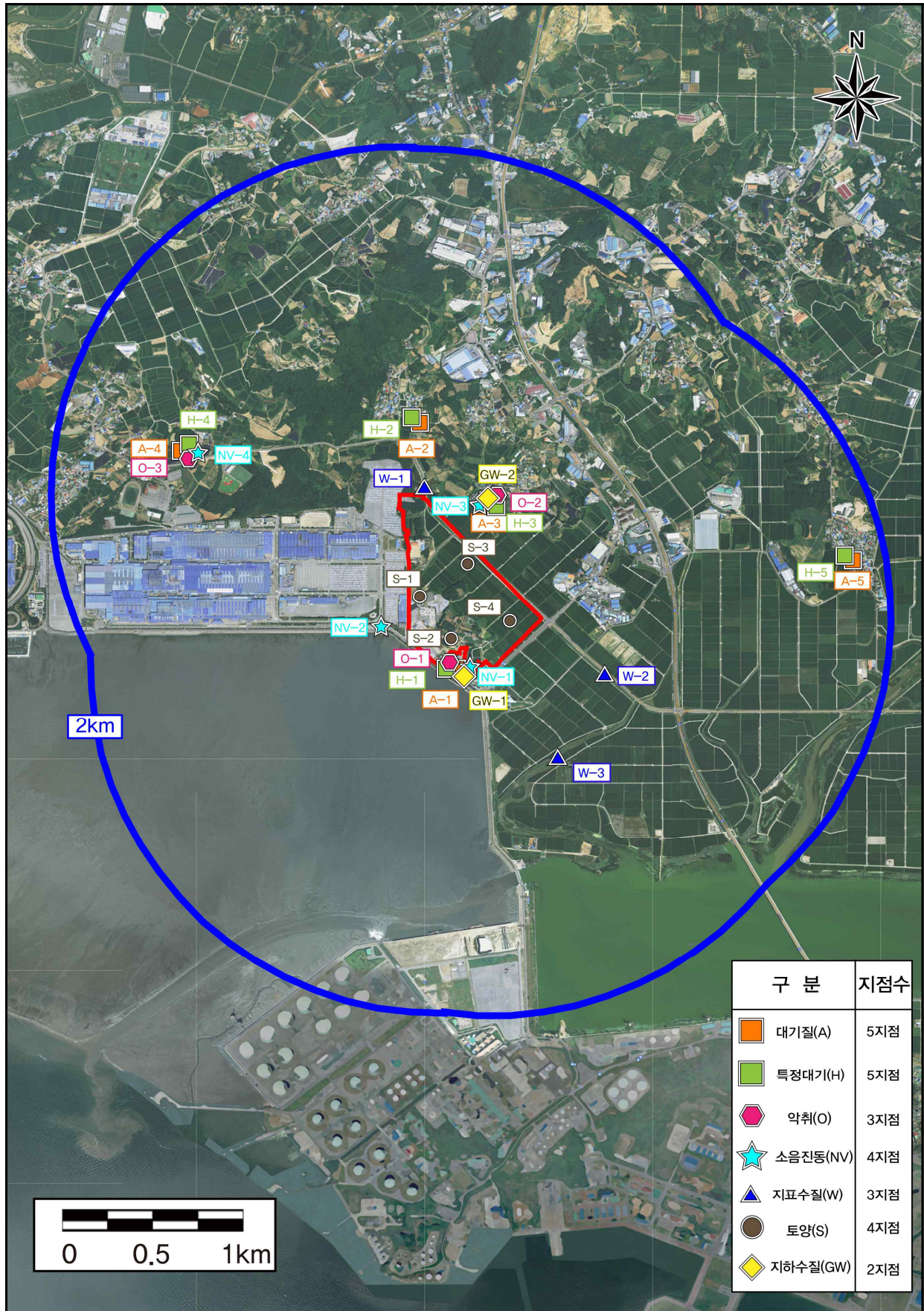
구 분	조사지점		비 고
대기질	A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099-1 (이화5리 마을회관)	-
	A-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526 (이화1리 마을회관)	-
	A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917-1 (이화3리 경로당)	-
	A-4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09 (석천3리 마을회관)	-
	A-5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930-207 (노진3리 마을회관)	-
악취	O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099-1	-
	O-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917-1	-
	O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09	-
지표수질	W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649-2	-
	W-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408-1	-
	W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304	-
지하수질	GW-1	경기 화성시 우정읍 남양만로 454	-
	GW-2	경기 화성시 우정읍 이화벙곳길 105	-
토양	S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170-2	-
	S-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산 165-9	-
	S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859	-
	S-4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002-1	-
위생 · 공중보건	H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099-1 (이화5리 마을회관)	-
	H-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526 (이화1리 마을회관)	-
	H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917-1 (이화3리 경로당)	-
	H-4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석천리 909 (석천3리 마을회관)	-
	H-5	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노진리 930-207 (노진3리 마을회관)	-
소음 · 진동	N · V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화길 8	-
	N · V-2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1714-3	-
	N · V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이화벙곳길 102	-
	N · V-4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가래길 16	-

주)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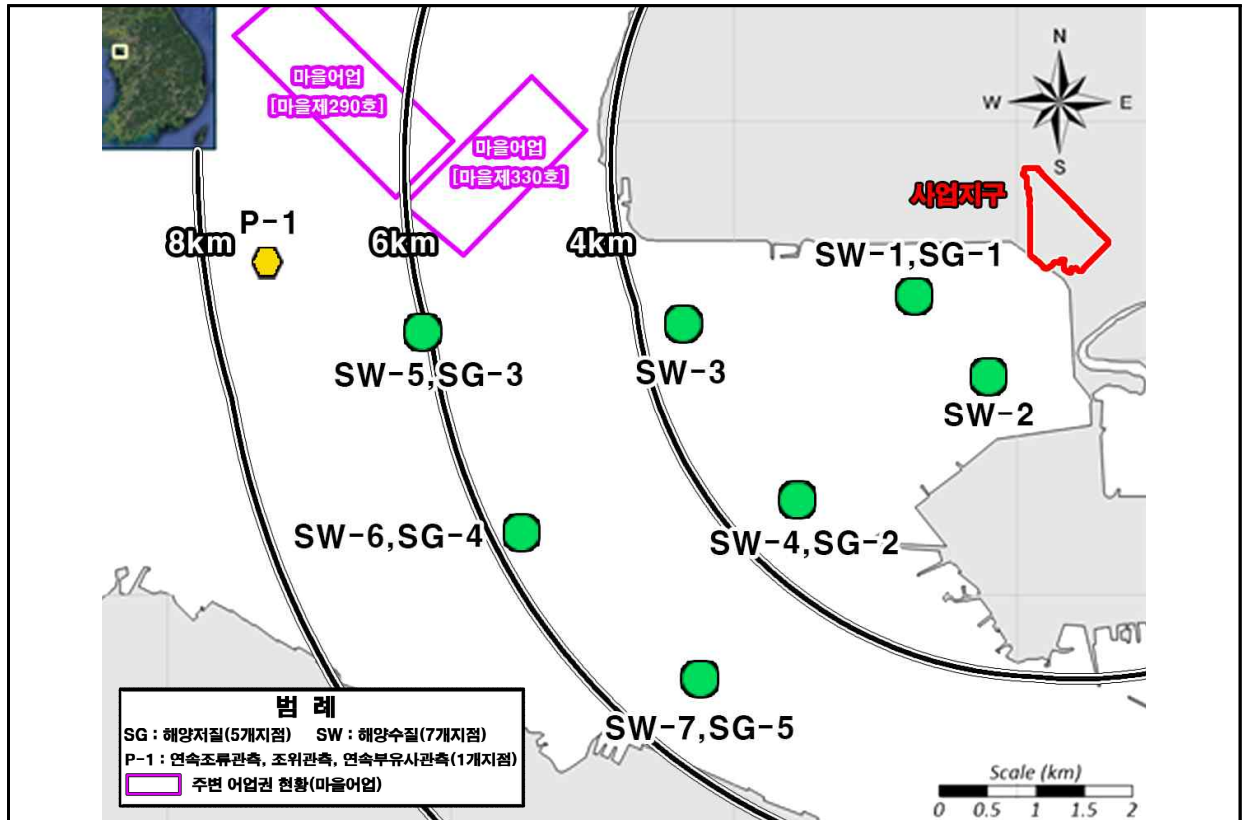
<표 2.1.4-5 > 해양환경 및 해양동·식물상 조사지점

구분		조사지점				비 고
해 양 환 경	해양수질	SW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석천항 남동측 1.2 km			-
		SW-2	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남양방조제 북서측 1.3 km			-
		SW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석천항 남서측 1.3 km			-
		SW-4	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10 서측 1.1 km			-
		SW-5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방도 북측 1.3 km			-
		SW-6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방도 남동측 1.1 km			-
		SW-7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방도 남동측 3.4 km			-
	해양저질	SG-1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석천항 남동측 1.2km			-
		SG-2	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1210 서측 1.1 km			-
		SG-3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방도 북측 1.3 km			-
		SG-4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방도 남동측 1.1 km			-
		SG-5	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항리 방도 남동측 3.4 km			-
해 양 동 식 물 상	해 양 물 리	P-1	37° 1'40.15"N, 126° 42'41.49"E			-
	동·식물 플랑크톤	ST-1	37° 1'20.55"N,	경도	126° 44'44.51"E	-
		ST-2	37° 0'51.87"N,		126° 45'10.07"E	-
		ST-3	37° 1'19.42"N,		126° 43'58.62"E	-
		ST-4	37° 0'18.86"N,		126° 45'13.15"E	-
		ST-5	37° 1'17.31"N,		126° 43'10.68"E	-
		ST-6	37° 0'14.50"N,		126° 44'28.74"E	-
		ST-7	36° 59'44.53"N,		126° 46'4.60"E	-
	조하대 저서동물, 어린자치어	ST-1	37° 1'20.55"N,	경도	126° 44'44.51"E	-
		ST-2	37° 0'51.87"N,		126° 45'10.07"E	-
		ST-5	37° 1'17.31"N,		126° 43'10.68"E	-
		ST-6	37° 0'14.50"N,		126° 44'28.74"E	-
		ST-7	36° 59'44.53"N,		126° 46'4.60"E	-
	연성조간대 저서동물	SB-1	37° 1'35.76"N,	경도	126° 47'18.13"E	-
		SB-2	37° 1'23.30"N,		126° 46'55.85"E	-
		SB-3	37° 1'10.81"N,		126° 46'32.98"E	-
		SB-4	37° 0'59.08"N,		126° 46'9.69"E	-
		SB-5	37° 0'46.27"N,		126° 45'46.08"E	-
	해산어류	F-1	37° 1'17.31"N,	경도	126° 43'10.68"E	-
		F-2	37° 0'14.50"N,		126° 44'28.74"E	-
		F-3	36° 59'44.53"N,		126° 46'4.60"E	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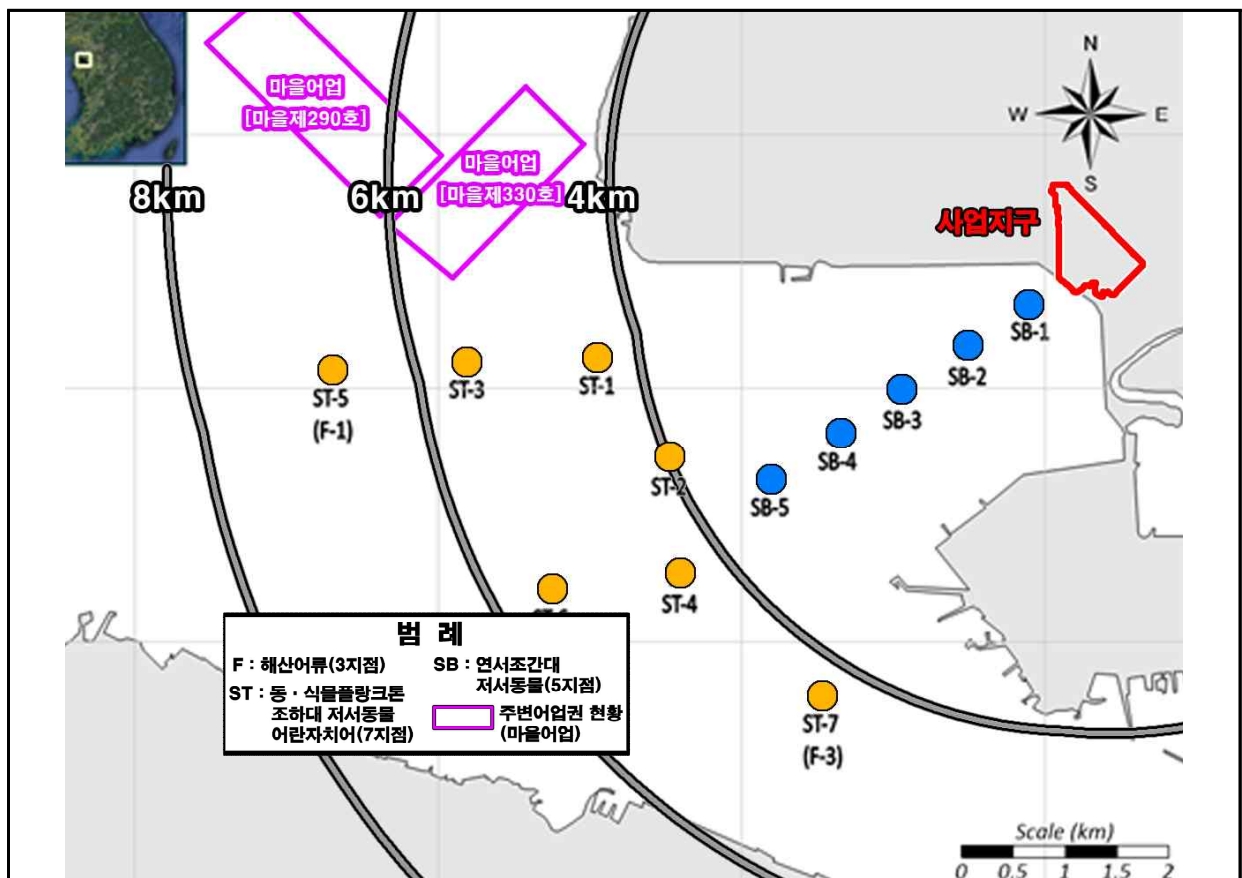
주) 조사지점은 현지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될 수 있음



(그림 2.1.4-2) 환경질 조사지점도



(그림 2.1.4-3) 해양환경 조사지점도



(그림 2.1.4-4) 해양동·식물상 조사지점도

2.1.5 주민의견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

- 본 사업은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23조(「환경영향평가법」 등의 적용특례)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(면적 448,800㎡) 15만㎡이상이므로 환경영향평가만 진행하며, 환경영향평가(초안) 단계에서 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9조(주민 등의 의견청취)에 의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
-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(「환경영향평가법」 시행령 제33조)
 - －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을 이용하여 공개
 - － 평가항목 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,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
- 평가서 초안 공고(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 제9조)
 - － 중앙 및 지방일간지 신문공고,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: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 이후 3일(근무일 기준) 이내에 공고(합동설명회 개최내용 포함)
- 평가서 초안 열람(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)
 - －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: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요약문
 - －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(www.eiass.go.kr) : 공고 및 공람 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 - － 공람장소 열람 : 화성시(우정읍)에 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을 비치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
-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 개최(「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」시행령 제7조)
 - － 공고일부터 10일(근무일 기준)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(설명회 장소는 가급적 사업지구 인근으로 선정하고, 국토교통부와 추후 협의하여 결정)
- 합동설명회 개최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음